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481

발의연월일: 2022. 5. 3.

발 의 자:김예지・이채익・추경호

이주환 · 김용판 · 김선교

이종성 · 김승수 · 이달곤

구자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소비생활의 방식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소비생활에 제약을 받는 소비취 약계층의 불편함은 오히려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비취약계층의 안전과 소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취약계층의 안전과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취약계층의 편리한 소비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 및 제19조제6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소비취약계층의 안전 및 소비생활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제1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소비취약계층의 안전 및 소비생활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 중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결혼이민자 등"으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책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	
를 진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u>
	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소비취약계층의 안
	전 및 소비생활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제19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⑤	제19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수
	<u>행함에 있어 어린이·노약자·장</u>
	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소비취
	약계층의 안전 및 소비생활 지
	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u>다.</u>

제45조(취약계층의 보호) ① 국가	제45조(취약계층의 보호) ①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노	
약자·장애인 및 <u>결혼이민자</u>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u>ㄷ</u>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